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보도시점: 2026. 9. 10.(목) 10:30 배포: 2026. 9. 10.(목) 08:30

지방체육단체 보조금은 빼돌리고, 대회 수익금은 쌈짓돈 쓰듯 “곳곳에서 줄줄 샀다”

- 국민권익위, 12개 기초지방정부 대상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 실태조사 실시
- 지방정부 보조금 받아 개최된 체육대회 수익금 누락 및 전반적인 관리 부실 확인
-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및 관계부처에 관리체계 정비 권고

【관련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원주시, 통영시, 전주시, 순창군, 진천군, 화성시, 진도군, 목포시, 구미시, 포항시, 양산시, 천안시

□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진한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수는 31,578개이며, 교부된 보조금은 약 1조 5,313억 원

- 체육행사 등 개최를 위한 보조금은 지방체육회 등 보조사업자가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조 제1항 제8호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4년 동안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수익금: 대회 참가비, 입장료, 협찬 및 후원금

이번 실태조사 시, 대다수의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제출된 수익금 집행 내역만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대회 필요경비를 3억 원이라 가정할 경우 보조금 교부 예시



□ ㄱ연맹의 경우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항공료는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했으며, ㄱ연맹은 다수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한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하여 약 1억 4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ㄴ체육회는 대회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약 5,800만 원 중 약 4,800만 원을 임의로 집행했고, 그 중 약 1,800만 원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부받은 보조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A기초지방정부의 체육분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2023년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24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A기초지방정부 일반회계 예산 약 2,0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집행했고, 허위 집행으로도 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ㄷ협회 사무국장은 본인이 보조사업에 사용할 물품에 대한 발주와 납품, 검수까지 모두 혼자 수행하면서 배우자.모친.장인 등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 원을 편취했다.

*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2024년까지의 체육분야 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것이나, 조사과정에서 2025년도까지 지속된 ㄷ협회 사무국장의 편취 행위가 확인됨

그밖에 다른 지역체육단체에서도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체육단체 임원이나 그 가족 업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96회에 걸쳐 약 2억 8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더불어, 보조금으로 지급된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별도의 증빙이나 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기초지방법정은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를 위해 ㄴ협회에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3년간 총 8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했지만, ㄴ협회가 어떻게 유치금을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C기초지방법정은 체육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ㄹ연맹에 대회타이틀 협찬 비용으로 매년 8,000만 원씩 3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사후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ㄷ체육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회 주관 중앙협회 및 연맹에 유치금 명목으로 총 14건, 총액 약 6억 2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유치금 세부 집행내역, 증빙자료 등을 위원회 조사 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유치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보조금이 체육회, 단체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황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ㄱ체육회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인건비 약 3,400만 원을 체육회 회장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ㅇ체육회는 종목단체 운영지원 명목으로 총 53개 단체 사무국장에게 매월 16만 5,000원 씩 매년 약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법령. 조례상 근거 없는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 이 외에도 계약 쪼개기, 식사비 허위·과다 청구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재교부하거나, 의무사항인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도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수익금 관리 등 구체적 규정의 미흡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체육의 저변 확대와 진흥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 체육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기초지방정부별 체육분야 실태조사 적발 사례

담당 부서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이규무 (044-200-7643)
			조사관	최영준 (044-200-7593)



#국민권익위#심사보호#공공재정#기초지방정부#체육분야#보조사업
#수익금#참가비#보조금 부당집행#내부거래#근거없는수당

기초 지방정부	사 례	비고
가	㉠체육회는 출전선수들로부터 걷은 참가비 약 5,800만 원 중 약 4,800만 원을 임의로 집행하고 그 중 1,800만 원 가량은 경조사비 등 목적 외로 집행하였음	수익금 관리 부실
	㉠체육회는 보조사업자로서 참가비 수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대행사에 참가비 수납 등을 맡기고 수익금 약 2,700만 원을 해당 민간 대행사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등 수익금을 부실하게 관리함	수익금 관리 부실
나	㉡ 소속 공무원은 2023년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24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가짜 임차 용역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일반회계 약 2,000만원 가량을 허위 집행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데 적극 관여	허위공문서 + 계약관련 법령 위반 + 보조금 편취 의심
	㉡는 ☆☆연맹에 대회타이틀 협찬 비용으로 매년 8,000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집행토록하였으나, 사후정산 자료 부존재	유치금 정산 등 부실
다	㉢★★협회 사무국장은 가족(배우자, 모친, 장인 등) 또는 친구 등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보조사업비 3억 9,715만 원을 편취 의심 ※ 다른 대회에 동일한 검수사진 반복 사용, 내구성 비품을 매년 반복 구매한 것처럼 허위 증빙 ㉢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 및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보조금 편취 의심
	㉢체육회는 법령, 조례 상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2022~2024년까지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에게 약 3억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집행	보조금 부당 집행(수당)

기초 지방정부	사 례	비고
㉠	○○연맹은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 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항공료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 것이 확인되었고, 여러 기초지방정부에 동일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하는 등 약 1억 4,000만 원 가량 편취 의심	수익금 편취 의심
	㉠체육회 및 종목단체협회는 경기용품·트로피 등을 구매하면서 비교 건적, 가격 적정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체육회 임원,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약 2억 원을 거래하였음	내부거래
㉡	㉡체육회 등은 2022-2024기간 중 22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약 3억원 상당 참가비 등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사실을 누락하고, ㉡는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등 부실 관리	수익금 관리 부실
	㉡체육회는 □□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해 ㉡로부터 보조금 2억 원을 교부받았고, 보조사업자인 ㉡체육회가 아니라 한국◆◆연맹이 참가비 약 8,200만 원을 수납, 한국◆◆연맹은 ,대회 관련하여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총액이 약 5,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도 사용처 확인이 안되거나 상당수가 대회 개최와 무관, 특히 약 3,000만원 차액 발생하는 등 편취 의심	수익금 편취 의심
㉢	㉢체육회는 2022-2024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회 등에 3억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유치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협회 등은 해당 유치금 지출 증빙 등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음. 이에 ●●협회에 유치금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협회는 "자료공개 불가"로 회신	유치금 정산 등 부실
	㉢체육회는 법령 및 조례 등에 수당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체육회 회장에게 매월 정액 75만 원, 총 2,700만 원을 직책급 업무수당으로 부당 지급	보조금 부당 집행(수당)
㉣	㉣체육회는 법령 및 조례 등에 수당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2023~2024 체육회 회장에게 매월 90만 원씩 정액으로 총 1620만 원을 업무수행비로 지급하고, 2022~2024 사무국장 등에게 매월 40만 원을 정액으로 총 1,740만 원을 직책수행 경비(활동비)로 지급하였음	보조금 부당 집행 (수당)
	㉣체육회는 2022-2024 체육분야 대회 개최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가비 등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에 수익금 관련 내역을 ㉣에 보고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아 보조금 약 7천만 원 상당을 과다 청구하고 수익금을 반납하지 않음	수익금 관리 부실

기초 지방정부	사 례	비고
㉠	㉠체육회는 ㉠㉠대회 개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2,257만 원 상당을 시상비 및 기념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경기 요원 일부에게 지급한 36만 원을 제외한 2,221만 원의 집행 자료가 부존재	수익금 관리 부실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 종목단체 부회장 및 이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로 약 500만 원을 사용하고, 종목단체 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음향, 무대 등 비용으로 약 1,2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됨	내부거래
㉡	㉡체육회는 기념품, 경기장 의자, 홍보물 등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전년도 증빙 등을 첨부 후 보조금 약 5,300만 원을 집행	보조금 편취 의심
	㉡체육회는 수익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 수익금에서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조금을 교부한 ㉡에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였으나, 총 5건, 714만 원을 미반납	수익금 관리 부실
㉢	㉢체육회는 운영비 지원 보조금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설치 운영 및 서버 구축사업'에 약 6,900만 원을 집행, 해당 사업은 자산성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일상경비인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보조금 편성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였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임에도 법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별도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음	보조금 부당 집행
	㉢◇◇협회는 대회 참가를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유류비로 집행하면서 3분간 총 10건, 75만 원을 급유, 해당 증빙에 첨부된 차주, 차량번호, 유종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부당 집행
㉣	㉣체육회는 보조금 교부 신청에 첨부한 대회 공고문에는 참가비 내용을 삭제하고, 실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공고문에는 이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수익금 발생 사실을 고의 누락하여 보조금 과다 수령, 금액미상의 수익금 미반납	수익금 관리 부실
㉤	㉤체육회는 참가비 등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에 수익금(참가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에 보고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고, 금액미상의 수익금을 반납하지 않음	수익금 관리 부실